

그룹내부통제규정

소관부서 : 준법감시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주)JB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이라 한다.) 및 그 자회사 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024.12.18. 개정)

제 2 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그룹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규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 금융지주회사등의 내규(정관은 제외한다)는 이 규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등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한다.

제 3 조 (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배구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각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4.12.18. 개정)

1. 「그룹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위험관리를 통하여 금융기관인 자회사등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2. 「그룹 내부통제」란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회사가 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3. 「그룹 내부통제체제」란 내부통제 관련 조직, 규정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체제를 말한다.
4. 「준법감시인」이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그룹 내부통제기준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형법,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배구조법 제2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2024.12.18. 개정)
6. 「책무」란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2024.12.18. 신설)
7. 「책무구조도」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로서, 임원별 책무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별 책무현황을 일괄하여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를 포함한다. (2024.12.18. 신설)

제 4 조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① 금융지주회사등의 업무분장과 조직구조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② 금융지주회사등의 직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제1항의 원칙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조직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자회사등의 조직구조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회사등에 대하여 조직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이라 한다)를 영위하여야 하며,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된 내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⑤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은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휘·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⑥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등을 영위함에 있어 자회사등에 대한 조언·시정 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자회사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거나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024.12.18. 개정)
- ⑧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함에 있어 자회사등의 협조 또는 이해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회사등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그룹 내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제 2 장 내부통제 조직 및 역할

제 5 조 (내부통제 조직) ①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다.

- ② 금융지주회사 등의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이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한 내부

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과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 6 조 (이사회)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을 통할하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자회사등의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각 회사별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제 7 조 (대표이사) ① 금융지주회사등의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24.12.18. 개정)

② 금융지주회사등의 대표이사는 지배구조법 제30조의3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2024.12.18. 신설)

③ 지주회사등의 대표이사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4.12.18. 신설)

제 8 조 (내부통제위원회)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내부통제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은 제외한다. (2024.12.18. 개정)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내부통제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2020. 3. 26. 개정)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내부통제 점검결과와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2.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3.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4.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④ 내부통제위원회는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조 (준법감시인) ① 금융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각 회사별 내부통제업무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금융지주회사등의 내부통제체제를 총괄한다. 이 경우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 10 조 (임직원) ①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규, 내규 및 윤리강령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은 소관업무 및 소관조직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위반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충실하게 점검하는 등 소관업무 및 소관조직에 대한 내부통제를 총괄한다. (2024.12.18. 개정)

③ 제7조 제2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 따라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2024.12.18. 개정)

제 11 조 (업무수행 시 준수절차) ①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금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금융지주회사등의 비전과 목표, 경영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등은 그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준수해야 할 기준과 유의사항 등을 각 회사 내규 등에 정하고 동 내규 등의 내용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제2항에서 정한 내규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 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체계 운영

제 1 절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조직

제 12 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① 금융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4.12.18. 개정)

1. 내규상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등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24.12.18. 개정)

③ 금융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재임 중 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2024.12.18. 개정)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의 사임·해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내부통제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이사회 개최일까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면보고) 금융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을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사유, 향후 임원 선임일정 및 절차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준법감시인의 임기) 금융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이상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연임될 수 있다.

제 15 조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① 금융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다.

③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은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등”은 “해당 금융회사”로 본다.

제 16 조 (내부통제 지원조직) 금융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능력 등 내부통제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적정 규모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을 두어야 한다.

제 17 조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보장)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2 절 준법감시체제 운영

제 18 조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 ① 금융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범위 및 점검주기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회사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내부감사부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 19 조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①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이 규정 및 각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대표이사 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대표이사 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결과 내부통제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회사등 및 관련부서로 하여금 미비점을 개선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회사등 및 관련부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등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0 조 (사전협의 등) ①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회사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지주회사등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사항 중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4 장 내부통제관련 임직원 준수사항

제 21 조 (임직원의 의무)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상태가 유지 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2 조 (비밀유지 등 의무)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각 회사의 고유 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 (이하 「비밀정보」 라 한다)를 관련 법규와 이 규정 및 금융지주회사등의 내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비밀정보는 그 기록 형태(메모, 서류, 전자파일 등) 및 기록 유무 등을 불문하며, 임직원은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비밀정보를 관리, 사용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 정보와 구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 23 조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에 대한 평가·관리) ①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 관련 부서(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소관부서를 말한다)는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②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등은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운용기준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운영현황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임직원 겸직의 경우 보고금융회사의 소관부서
2. 업무위탁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소관부서

④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운영 및 관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회사등 또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미비점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4 조 (신상품 개발 등의 업무절차) ① 금융지주회사등이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25 조 (불공정행위의 방지) ①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 또는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의 보고 등의 절차나 기준은 금융지주회사등의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련 내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회사등 준법감시인의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해당 회사 임직원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④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자금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예금 등의 구속 행위 및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고객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5 조의 2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금융지주회사등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018.05.11. 신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2018.05.11. 신설)
2.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의 마련 및 운영 (2018.05.11. 신설)
3.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 및 교육·연수 (2018.05.11. 신설)

제 26 조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고객과 금융지주회사등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고객과 금융지주회사등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이해상충 유무를 고지하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무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제3항에 따른 조치나 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절차상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조치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등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등은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정보교류차단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27 조 (공동광고 및 영업점 등 시설의 공동사용 시 준수사항) ① 금융지주회사등이 공동광고를 하거나, 사무공간, 영업점, 전산시스템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장치나 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점검결과 고객 보호 및 금융지주회사등간 이해상충 방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회사등에 대하여 장치나 대책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8 조 (광고 등) 금융지주회사등은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29 조 (고객정보의 공유)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고객정보의 제공 등 법규에 따라 허용된 경우 외에는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 공유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하거나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유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회사등은 정기적으로 고객정보의 공유현황을 금융지주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고객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정보제공 목적 외의 사용 여부, 보안대책 또는 보안시스템의 적정성 및 정보공유 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 30 조 (직무분리기준 등)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분리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별도의 보완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1 조 (전달체계)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소속 회사들 사이 및 임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금융지주회사등의 비전과 전략 및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공유되도록 하는 정보 및 의사 전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에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경영정보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 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비점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2 조 (전달방법) 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 및 의사전달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경영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자회사등의 주요 경영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이는 공식문서(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공식문서로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관련 내규에 정하여야 한다.

제 33 조 (영업점 자체점검) 금융지주회사등은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 34 조 (내부고발제도)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고발제도를 총괄하는 자를 지정하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와 그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그룹에 제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35 조 (명령휴가제도) 금융지주회사등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 36 조 (제·개정) ① 이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법령 및 내규의 개정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 등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변경할 수 있다.

②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 37 조 (위임사항)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회사 내규 및 업무절차 등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직무와 지원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부 칙

연혁	개정일자	시행일자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등
제정	2016.10.31	2016.10.31	제 1 조 (준법감시인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1항 중 준법감시인의 자격기준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준법감시인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준법감시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지주회사 등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규정 시행 후 2년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 이규정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 중 준법감시인의 자격기준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1)	2018.05.11	2018.05.11	[자금세탁방지 내용 신설 및 그룹 규정 표준화에 따른 개정]
개정(2)	2020.03.26	2020.03.26	
개정(3)	2024.12.18	2024.12.18	